
2024년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안내서 <지원과제>

2024. 2.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목 차

1. 사업 개요	3
2. 2024년 추진 계획	4
3. 2024년 지원 내용	6
4. 선정 방법	7
5.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10
6. 유의 사항 및 관련 규정	12
7. 신청 기간 · 방법 및 문의처 등	14
 [참고 1] GSIP 글로벌 진출 현황	17
[참고 2] SaaS 기술 요건	18
[참고 3] GSIP 매출 목표 및 인정 기준	19
[참고 4]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SaaS 지원기업 협업절차	20
[참고 5] 개인정보 보호 방안	21
[참고 6]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22
 [붙임 1] 신청 양식	
[붙임 2] 관련 규정	
[붙임 3] 비 · 세목별 사업비 산정 및 불인정 기준	
[붙임 4] 글로벌 진출 가이드라인	
[붙임 5] 전년도(2023년) 빅테크기업별 주요지원내용	
[붙임 6]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과제신청 매뉴얼	
[붙임 7]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SaaS는 구축형 SW(SI, 패키지 SW 등)대비 여러 장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SW기업이 SaaS로 급속히 전환 중

○ 국내 시장은 글로벌에 비해 시장규모 및 성장세가 아직 미흡*하나 국내 SaaS 기업은 지속 증가** 추세

* (글로벌) '21년 292조원→'24년 400조원/(국내) '21년 1.2조원→'24년 1.62조원(IDC, '22)

** ('19) 650개→('22) 1,324개(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23)

- 글로벌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SaaS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 국내 SaaS 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발굴 필요

* 샌드박스(채팅서비스, 기업가치 1조 7천억원), 모로코(광고솔루션, 기업가치 약 2조원), 스위트(업무관리 및 업무용 메신저, 기업가치 3,500억원) 등

□ 사업 목적

○ 국내 SaaS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과 국내 SaaS 기업이 협업하여 글로벌 SaaS 개발·사업화 추진

* AmazonWebServices(AWS), Microsoft(MS), GoogleCloud, Oracle, Salesforce.com 등

< GSIP 개념도 >



2

2024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과 국내 SaaS 기업이 협업하여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은 인프라(IaaS·PaaS)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SaaS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2023년 참여기업) AmazonWebServices(AWS), Microsoft(MS), Oracle, Cybozu

** SaaS 기술 요건과 국제화·현지화를 충족하는 PaaS-IaaS 기반 서비스형 SW

<참고>

- GSIP 선도기업 모집 공고를 별도로 내지 않으며, SaaS 개발과제* 지원을 위한 **CSP/MSP Pool 모집**을 통해 해당 Pool에 지원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SaaS 수행기관이 매칭

* 글로벌SaaS육성프로젝트, 유망SaaS개발육성지원, 초거대AI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역량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4년 5월~12월 (8개월)

- (지원내용)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글로벌 SaaS 신규개발 및 구축형SW·내수형SaaS를 글로벌 SaaS로 전환(개발) 비용
- 해외 전시회 참여 비용 및 글로벌 현지화 전략 마련 비용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총 99.5억원 (22개 과제, 과제당 4.52억원 이내)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물+현금)으로 구성

※ 지원과제의 기금지원금 신청금액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과제 추가선정 가능

- ※ 협약체결 후 전체 지원예산의 65%(‘24년 6월), 35%(‘24년 12월) 2회로 나누어 지급 예정
-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참고)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3.12.14)」 [별표1] 준용

<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및 예시 >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	민간부담금(기업)			사업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기준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예시	452,000천원	150,667천원	15,067천원	135,600천원	602,667천원
중견기업	기준	총사업비의 70% 이내	총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예시	452,000천원	193,714천원	25,183천원	168,531천원	645,714천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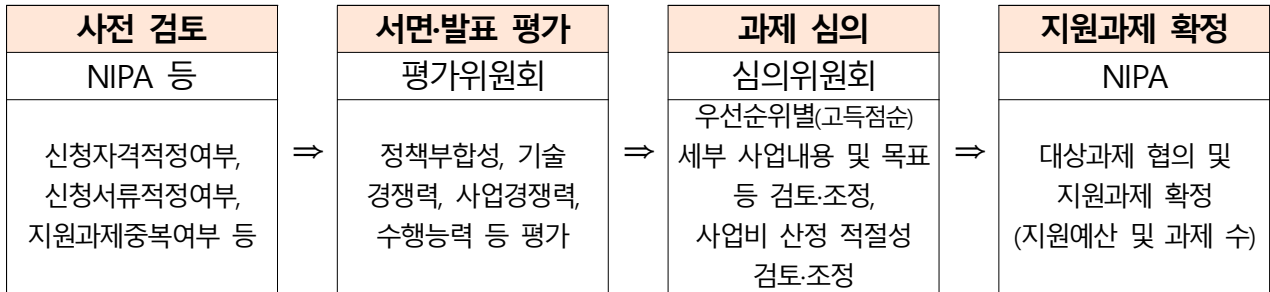
2024년 세부 지원내용

구분	2024년 지원내용																										
신청 대상	■ 글로벌 SaaS* 신규 개발·사업화, 구축형 SW 또는 내수형 SaaS를 글로벌 SaaS로 전환(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 SaaS 기업 * SaaS 기술 요건과 국제화·현지화를 충족하는 PaaS·IaaS 기반 서비스형 SW [유의] 신청과제 수행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단독이면서 법인사업자여야 함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컨소시엄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수행 기간 및 내용	■ (수행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 ■ (수행 내용)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보유한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SaaS 기술 요건과 국제화·현지화를 충족하는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 참고 2 <SaaS 기술 요건> 및 붙임 4 (글로벌 진출 가이드라인) 확인																										
지원 내용	<table><tr><th>구분</th><th>예산 외 지원 내용</th></tr><tr><td>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 운영</td><td> •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보유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운영 - 글로벌 SaaS 개발·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빅테크 기업 별도 모집 * '24년 공고 : CSP/MSP Pool 모집으로 공모 추진 - 빅테크 기업별 지원계획 공유(홈페이지 및 설명회 개최 등)를 통해 SaaS 수행기관이 빅테크 기업 선택하여 매칭 - 수행기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참고 4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SaaS 지원기업 협업 절차(안)> 확인 ※ CSP/MSP가 제시하는 “지원 가능 SaaS 기업 수”를 초과하여 특정 CSP/MSP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글로벌 빅테크 선택 가이드(안)> <table><tr><th>구분</th><th>인프라</th><th>컨설팅/기술지원</th><th>마케팅</th><th>교육</th></tr><tr><td>SaaS A社</td><td colspan="4">빅테크 A社</td></tr><tr><td>SaaS B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d>빅테크 B社 빅테크 C社</td><td>빅테크 D社</td></tr><tr><td>SaaS C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r></table> ※ 붙임 5 <전년도(2023년) 빅테크기업별 주요지원내용> 확인 </td></tr><tr><td>부트캠프 개최</td><td> • SaaS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개발 방법론, 글로벌 진출 전략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관리, 시스템 이용법 등 과제 관리 교육 운영 </td></tr></table>	구분	예산 외 지원 내용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 운영	•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보유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운영 - 글로벌 SaaS 개발·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빅테크 기업 별도 모집 * '24년 공고 : CSP/MSP Pool 모집으로 공모 추진 - 빅테크 기업별 지원계획 공유(홈페이지 및 설명회 개최 등)를 통해 SaaS 수행기관이 빅테크 기업 선택하여 매칭 - 수행기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참고 4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SaaS 지원기업 협업 절차(안)> 확인 ※ CSP/MSP가 제시하는 “지원 가능 SaaS 기업 수”를 초과하여 특정 CSP/MSP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글로벌 빅테크 선택 가이드(안)> <table><tr><th>구분</th><th>인프라</th><th>컨설팅/기술지원</th><th>마케팅</th><th>교육</th></tr><tr><td>SaaS A社</td><td colspan="4">빅테크 A社</td></tr><tr><td>SaaS B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d>빅테크 B社 빅테크 C社</td><td>빅테크 D社</td></tr><tr><td>SaaS C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r></table> ※ 붙임 5 <전년도(2023년) 빅테크기업별 주요지원내용> 확인	구분	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	교육	SaaS A社	빅테크 A社				SaaS B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빅테크 B社 빅테크 C社	빅테크 D社	SaaS C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부트캠프 개최	• SaaS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개발 방법론, 글로벌 진출 전략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관리, 시스템 이용법 등 과제 관리 교육 운영
구분	예산 외 지원 내용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 운영	•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보유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운영 - 글로벌 SaaS 개발·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빅테크 기업 별도 모집 * '24년 공고 : CSP/MSP Pool 모집으로 공모 추진 - 빅테크 기업별 지원계획 공유(홈페이지 및 설명회 개최 등)를 통해 SaaS 수행기관이 빅테크 기업 선택하여 매칭 - 수행기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참고 4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SaaS 지원기업 협업 절차(안)> 확인 ※ CSP/MSP가 제시하는 “지원 가능 SaaS 기업 수”를 초과하여 특정 CSP/MSP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글로벌 빅테크 선택 가이드(안)> <table><tr><th>구분</th><th>인프라</th><th>컨설팅/기술지원</th><th>마케팅</th><th>교육</th></tr><tr><td>SaaS A社</td><td colspan="4">빅테크 A社</td></tr><tr><td>SaaS B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d>빅테크 B社 빅테크 C社</td><td>빅테크 D社</td></tr><tr><td>SaaS C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A社</td><td>빅테크 B社</td></tr></table> ※ 붙임 5 <전년도(2023년) 빅테크기업별 주요지원내용> 확인	구분	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	교육	SaaS A社	빅테크 A社				SaaS B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빅테크 B社 빅테크 C社	빅테크 D社	SaaS C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구분	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	교육																							
SaaS A社	빅테크 A社																										
SaaS B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빅테크 B社 빅테크 C社	빅테크 D社																							
SaaS C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A社	빅테크 B社																							
부트캠프 개최	• SaaS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개발 방법론, 글로벌 진출 전략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관리, 시스템 이용법 등 과제 관리 교육 운영																										

4

선정 방법

< 선정 절차 >



① 사전 검토

○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및 조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조회, NIPA 담당자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검토하며, 부적정시 사전지원제외 등 조치
- 서면 및 발표 평가시 사전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진행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신청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관, 수행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자본전액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여부
사업비 적정 여부	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사전지원제외(평가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과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 인가를 받은 화생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이행중인 경우는 예외)
5.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장"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② 서면 및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신청기업의 수행계획의 정책 부합성, 기술 경쟁력, 사업 경쟁력, 수행 능력 등 평가

- 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33개 과제에 대해서만 발표평가 진행(1.5배수)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NIPA 웹사이트 게재, 총괄책임자 메일 등을 통해 안내

※ 신청과제수가 발표평가 대상과제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고배점 항목의 취득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발표 평가시(4월말 예정)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

※ 별도 발표자료 없이 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로 평가 (세부사항 추후 안내)

< 서면 및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30)	목적 부합성	• 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10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기대효과 등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20
기술 경쟁력 (20)	기술 유용성 등	• 개발 및 보유 기술 전망, 가치 등 기술 유용성 • 개발 및 보유 기술 차별성, 혁신성, 적정성 등 기술 경쟁력	5
	클라우드 적용	• 클라우드 적용 사전 준비 정도 • 클라우드 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클라우드 적용 아키텍처, SaaS 요건 충족, 과금 체계 등	15
사업 경쟁력 (35)	시장 적합성	• 목표 시장과 개발 서비스간 제품시장 적합성 - 목표 시장 규모, 경쟁 강도, 성장성 등 시장 분석 정도 - 목표 시장내에서의 차별성, 혁신성 등 시장 경쟁력 정도	10
	사업화 가능성	•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가능성 - 목표 고객·매출 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해외수요처 수요확약서 확보 등 글로벌 진출성공 가능성	25
수행능력 등 (15)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수행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10
	관리 적정성	• 자체수행비중, 수행일정,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외부용역비중, 수행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바·세·목 구성내역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5
합계			100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 성과 파급력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수행기간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제시
 - 협약이 완료된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 직접고용규모 목표치는 기금지원금 1억원 당 1.50M/Y 이상 산정 권장
 - 국내+국외 매출액 목표치는 ROI(정부지원금) 기준 50% 이상 산정 권장
- 클라우드 적용
 - 구축형 SW가 아닌, 클라우드 적용 아키텍처, SaaS 요건 충족, 과금 체계 등 SaaS 개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사업화 가능성
 - 진출국가·이용대상·매출, 국제화·현지화 전략 등 글로벌 진출 세부계획 제시
 - 수요처의 수요 확약서 등 글로벌 진출 관련 증빙 제출 권장
- 수행 능력
 - 구축형 SW의 SaaS 전환 과제인 경우 시험결과서 및 인증서, 매출증빙, SaaS 전환 대상의 구축형 SW의 개발 및 사업화 관련 기 수행 실적 제출 권장
- 관리 적정성
 - 간접비용(사업추진비 등)보다는 직접비용(IaaS 임차료, 마케팅비, 인건비 등) 산정 권장
 - 외부용역보다는 수행기관 직접 수행 권장 (전문가 채용 등)

③ 과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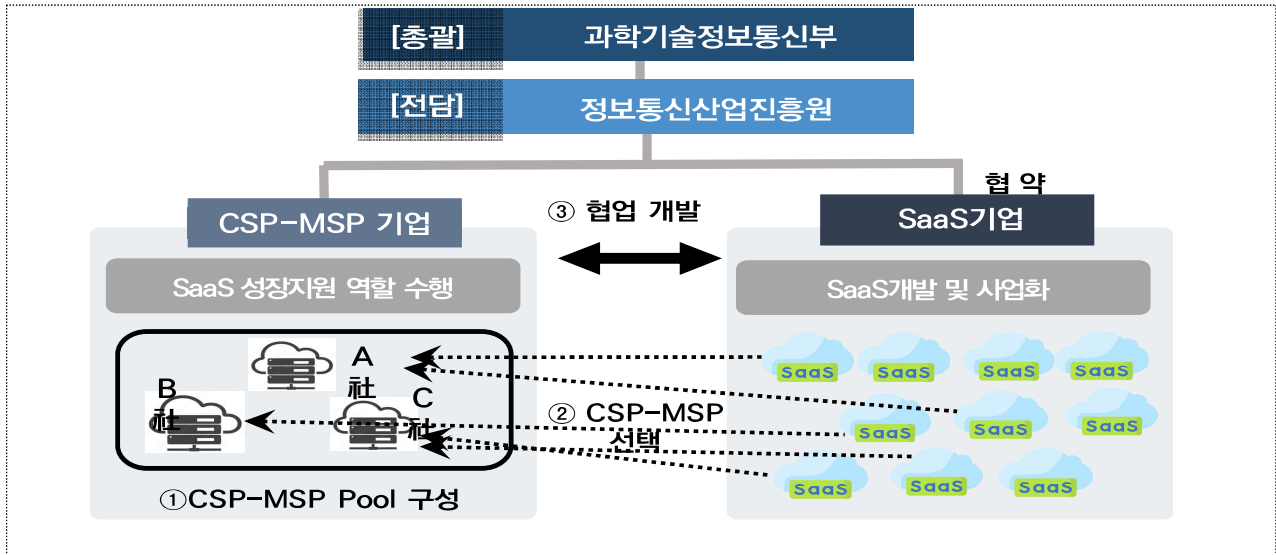
- 발표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고득점순)별 우선순위 부여, 지원예상기업 대상(상위 22개 기업)으로 과제 중복성, 세부 과제내용·목표, 사업비 비·세목 산정 내용 등 검토·조정
 - 별도의 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총괄책임자와의 대면 면담을 통해 과제 세부내용·사업비 검토 및 조율

④ 지원과제 확정

- 과제 심의 결과 대상 과제 협의 및 지원과제 확정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과제 확정하며, 과제내용 및 사업비 수정·보완 불가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

5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 ▶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 (CSP·MSP Pool)	▶ 글로벌 SaaS육성프로젝트(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수행 지원
수행기관 (협약)	SaaS기업 ▶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및 사업목표 성과관리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진 일정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안)
사업 공고	▶ CSP Pool 모집	(NIPA)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 사업설명회 (온·오프라인 진행)	2월 3주~2월 4주
	▶ MSP Pool 모집			
	▶ SaaS 공모			2월 4주~3월 4주
▼				
심의	▶ CSP Pool 심의	(NIPA)	· 신청한 CSP/MSP Pool 구성 적격성 등 심의	~3월 1주
	▶ MSP Pool 심의			
▼				
CSP /MSP Pool 공지	▶ CSP MSP CSP/MSP Pool 설명회	(NIPA)	· CSP/MSP Pool 선정 결과 및 지원내용 NIPA홈페이지 공개 (온라인)	~3월 2주
			· CSP/MSP Pool 설명회 (오프라인)	~3월 2주
			· SaaS기업은 선택한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수행계획에 반영	~3월 4주
▼				
▶ SaaS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3월 4주~5월 2주
▼				
▶ SaaS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 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5월 3주
▼				
▶ SaaS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5월 4주
▼				
▶ SaaS 협약체결		(NIPA ↔ 수행기관)	· 선택한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 최종 반영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5월 5주
▼				
▶ SaaS 사업비 지급		(NIPA)	· 사업비 지급 2회(6월 65%, 12월 35%)	-
▼				
▶ SaaS 과제 수행 및 지원		(NIP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5월~12월
▼				
▶ SaaS 점검		(NIPA)	· 현장 및 진도점검 (연2회 이상)	8월, 11월(예정)
▼				
종료	▶ CSP 만족도 평가	(수행기관 → NIPA)	· SaaS기업 대상 C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12월
	▶ MSP 만족도 평가		· SaaS기업 대상 M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 SaaS 결과보고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성과공유회 개최	
▼				
▶ SaaS 결과 평가		(NIP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25년 1월
▼				
▶ SaaS 사업비 정산		(NIP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5년 1~3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6

유의 사항 및 관련 규정

□ 유의 사항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	○ 외부시험인증, 매출액, 직접고용규모는 필수 성과지표임 ○ 목표치는 수행기간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지 증빙 제출 - (외부시험인증) SaaS 관련 외부 시험인증 필수 ·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부 시험인증 기관 이용 권장 - (매출액) 국내·외 합산하여 ROI(기금사업비) 기준 50% 이상 산정 권장 · 예 : 기금지원금이 4.52억원이면 국내+국외 매출액 목표치 2.26억원 이상 · 국외매출은 필수(금액 무관)이고 국내매출은 선택임 ※ 참고 3 (GSIP 매출 목표 및 인정 기준) 확인 - (직접고용규모) 기금지원금 1억원 당 1.50MY 이상 산정 권장 · 예 : 기금지원금이 4.52억원이면 직접고용규모 목표치 6.78MY 이상
	과제내용	○ 신청과제와 가수행과제 유사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미 구분시 중복과제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수행기간 내와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참여인력	○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
	사업비	○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붙임 3 (바세목별 사업비 산정 및 불인정 기준) 확인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	○ 올해 빅테크기업 및 지원내용은 3월 첫째주 NIPA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지원과제(SaaS 기업)는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계획서 작성 ※ 붙임 5 <전년도(2023년) 빅테크기업별 주요지원내용> 확인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 ○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 참고 5 (개인정보 보호 방안) 확인
신청서류 제출시		○ 필수 신청서류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안내서(지원과제) 13p. 신청서류리스트 꼼꼼히 확인 ○ 신청 방법(SMART) 및 시한(3.29 목 11:00) 엄수 -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 -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하며, 3.28.(목)까지 신청 완료 권장
지원과제 선정 이후		○ 최종 선정된 지원과제는 협약체결시 추가제출서류 있음 - 기금사업비(정부)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민간부담금(기업) 현금을 전액 납입한 사업비관리계좌 등 ○ 기금사업비(정부)는 2회로 분할 지급 (6/12월에 65/35% 지급 예정) - 기금의 수입 부족 등 재정 사정 및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지급 시기 및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GSIP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R&D사업으로 기술료 미징수 ○ 수행기간 종료후 5개년간 매출액 등 성과활용 현황조사 실시

□ 관련 규정

구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 1.1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 1.19.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2022. 1.14.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2021. 3.31.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일부 준용	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제19조 제3항 관련(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7 신청 기간 · 방법 및 문의처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4. 2. 23.(금) ~ 3. 29.(금) 11:00(오전)

○ (방법)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인터넷 신청

- ※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과제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 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과제 신청 시, 사용 미숙, 접속 지연, 업로드 실패 등으로 정상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28(목)까지 신청 완료 권장
- ※ e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 전에 신청서류 적정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 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사업비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②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SMART 웹사이트(smart.nipa.kr) > 로그인(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 > "과제신청"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및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내용 입력 (수행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2024년 기금사업 수행계획서 및 불임 각 1부)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접수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 불임 6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과제신청 매뉴얼> 확인

□ 신청 서류

○ 2024년 기금사업 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 신청서류 리스트 >

구분		필수여부	작성양식	비고
2024년 기금사업 수행계획서		○	신청양식 0	· 표지 서명날인한 PDF 제출 · 표지 서명날인이 없는 HMP도 제출
붙임 1	신청자격등적정성확인서	○	신청양식 1	· 서명날인한 PDF 제출 · 서명날인 없는 HMP도 제출 · 증빙 제출 대상 해당시 증빙 필수 제출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2	· 날인한 PDF 제출 · 날인 없는 HMP도 제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3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 서명 없는 HMP도 제출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신청양식 4	· PDF와 HMP 제출
붙임 5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신청양식 5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PDF와 XLSX 제출
붙임 6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6	· PDF와 XLSX 제출
붙임 7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예시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 기준유사도 : 60점 - 검색연도 : 2018년~현재까지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붙임 8	사업자등록증명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2024년 발행본(PDF) 제출
붙임 9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MME) 이용 · 신청마감일(2024.3.29.) 기준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발행본(PDF) 제출
붙임 10	기타증빙	X	자유양식	· 구축형 SW 개발사업화 증빙 수요약서 등 수행계획 관련 증빙 · PDF·HMP·PPT 등으로 제출

※ 붙임 1 (신청 양식) 확인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클라우드사업 통합설명회>

◎ 일정/장소 : 2024년 2월 27일(화)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지하1층 대회의실1

* 서울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350m 거리 위치

◎ 주요내용 : 클라우드 관련 사업 통합설명회이며, 유망 SaaS 개발·육성지원사업 주요 공고내용 발표 진행

< CSP·MSP Pool 지원내용 설명회 >

◎ 일정/장소 : 2024년 3월 2주차 / 미정*

* NIPA 홈페이지를 통해 CSP·MSP Pool 공지 시 상세 일정 및 장소 안내

◎ 주요내용 : 글로벌 SaaS육성프로젝트 내 지원할 CSP·MSP Pool 참여기업별 제공 인프라·플랫폼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 관련 상세 발표 진행

□ 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e메일)
사업 및 과제 내용문의	지원과제 (SaaS 기업)	클라우드산업팀	정은주 책임	043-931-5775 (jej1616@nipa.kr)
			황은진 책임	043-931-5772 (heunjin@nipa.kr)
	CSP·MSP Pool		손예지 선임	043-931-5783 (syj@nipa.kr)
이메일 및 시스템 접수문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담당자		070-5151-8239 (smart@nipa.kr)

참고 1

GSIP 글로벌 진출 현황 (2023.12.31. 기준)

GSIP 글로벌 진출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참고 2 SaaS 기술 요건

SaaS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검증되어야 함

< SaaS 기술 요건 >

구분	내용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함 * B2B서비스의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의 역할 및 권한 설정 등도 해당
범용 네트워크 접속 (Broad Network Access)	SaaS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함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 and Scaling)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IT 자원의 공동 이용 (Resource Pooling)	IT 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개인화)할 수 있는 분리 다중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 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 이용 확인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멀티 테넌시 (Multi-Tenancy)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SaaS 사용자들은 동일한 SaaS 고객 조직에 속함

참고 3 GSIP 매출 목표 및 인정 기준

- 매출성과
 - GSIP 지원과제의 사업화를 통해 수행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
- 매출 목표 금액은 입금 시점, 증빙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수치로 산정
 - ROI(기금지원금) 기준 50% 이상 권장
 - ※ 예 : 기금지원금이 4.52억원인 경우, 목표 금액은 2.26억원 이상 산정 권장
 - 매출 금액은 최초 산정한 목표 수치에서 하향 조정 불가하며, 최종 평가 시 목표 대비 성과 및 증빙 확인
- 최종 평가 시, 매출 및 증빙은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GSIP 지원과제 관련 매출로 인정함
 - ① GSIP 지원과제의 사업화를 통해 수행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
 - 기존 서비스명과 구분되는 GSIP 지원과제의 서비스명으로 발생한 매출
 - ※ 예 : OOOO Cloud, OOOO SaaS, OOOO v.2.0 등
 - GSIP 지원과제 수행기간 내에 발생하고 입금까지 완료된 매출
 - ② GSIP 지원과제 연관성 및 매출 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 (공통) GSIP 지원과제 서비스명이 명기되고, 사업기간 내 발행된 증빙
 - ※ 최종보고서와 증빙 간의 서비스명이 동일하여야 함
 - ※ GSIP 지원과제의 국내본사 입금 기준
 - ※ 과제기간 초기는 개발 진행 중으로 고려하여 매출 발생 인정하지 않음
 - (국내매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은행발행분)(2종 모두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국외매출) 증빙은 인보이스와 입금증(은행발행분), 금액은 최종 입금된 금액(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
 - (B2C) 증빙은 카드거래내역서(카드사발행분)와 입금증(은행발행분), 금액은 최종 입금된 금액(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
- 매출 불인정 사례
 - 증빙에 서비스명 미기재 등 GSIP 지원과제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매출
 - 국외매출 입금증의 입금처가 지원과제 국내본사가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는 기간 내 발행하였으나 입금은 수행기간 후에 이루어진 매출
 - ※ 예 : 2024.12.30.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2025.1.1. 입금된 매출
 - '24년 6월 이전(사업화 시작 전)에 발생한 매출
 - 제3자(은행, 카드사) 발행분이 아닌, 엑셀 등으로 작성한 입금내역, 카드거래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하는 매출

참고 4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SaaS 지원기업 협업 절차(안)

프로세스	지원 내용
공 고 시	빅테크 기업 지원계획 고지 (3월 2주 예정) - 2024년 SaaS 개발지원사업 CSP-MSP Pool 지원기업 중 GSIP 글로벌 빅테크 기업별 SaaS 지원과제 지원 서비스 사전 안내 · NIPA 홈페이지를 통해 SaaS 지원과제 공고 마감 전 공지
	CSP-MSP 설명회 개최 (3월 2주 예정) - 선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CSP-MSP Pool 참여기업별 지원계획 발표 · SaaS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할 내용 (크레딧 교육 기술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제안 발표, 기업별 질의 응답(Q&A) 등 진행
	빅테크 기업 내용 반영 - NIPA 홈페이지에 개시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별 지원내용(24년 확정본) 및 CSP-MSP 설명회 발표내용 기반으로 SaaS 지원과제는 최종 협업할 빅테크 기업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 작성 및 제출
협 약 전	협업 내용 확정 - SaaS 기업과 빅테크 기업의 분야별 선택 추진 · 교육/컨설팅/인프라는 빅테크기업 1개씩 선택, 마케팅은 빅테크기업 2개 까지 매칭하여 SaaS 기업과 빅테크기업의 분야별 선택 확정 * 1개의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도 가능하며, 필요시 지원분야별 선택도 가능
협 약 중	파트너십 운영 - 지원과제는 선택 완료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서비스 활용하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빅테크 기업 최종 평가 - 매칭된 지원과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포함하여 최종 평가
	성과 발표회 개최 - (지원과제) 우수과제 선정 시 글로벌 진출 성과 반영, 우수과제 홍보 - (빅테크기업) 우수 빅테크기업 선정 시 매칭된 지원과제의 글로벌 진출 성과 반영

참고 5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행점검·조치 방안 포함)
 - **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이용·제공, 개인정보보관·파기
(상시점검)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 윤리점검 이행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시 사전 또는 중도 지원제외 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 제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수행기관 대상 (사전 또는 중도 지원제외 여부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협약 체결 시 이수증 제출
 -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지원과제 협약체결 전에 제출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과제 내용 검토, 진도 점검, 최종 평가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요구,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붙임 7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가이드라인) 확인**

참고 6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 선정 과제 중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개발과제는 추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내 체크리스트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전문인증기관(TTA) 판단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AI 신뢰성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AI 신뢰성 고위험군 정의 >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나. 「보건의료기기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